

國公立大學圖書館協議會 褒賞 規程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국공립대학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현격한 공로가 있거나, 국공립대학 도서관에 장기근속한 자에게 치사와 격려의 뜻으로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대상과 자격) 대상과 자격을 다음 각 항의 해당자로 한다.

- ① 공로상 : 본 협의회 회원 도서관에 20년 이상 사서직으로 근무하고 명예퇴직 하거나 정년 퇴직하는 자, 또는 협의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
- ② 감사패 : 본 협의회 또는 회원 도서관 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

제 3 조 (제출서류) ① 이력서 1통 (제2조 1항에 해당자)

- ② 공적조서 1통 (제2조 1항에 해당자)
- ③ 경력증명서 1통 (제2조 1항에 해당자)

제 4 조 (심사) 본 협의회 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다.

제 5 조 (시상) ① 시기 : 총회 또는 세미나 등의 본 협의회 행사 시

- ② 상 : (1) 제2조 1항 (공로상) : 공로패와 금지환 순금 3돈
- (2) 제2조 2항 (감사패 등) : 감사패 또는 공로패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 이전에 포상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포상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